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개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 과세대상 법인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소득 [지방세법 제87조](#)
- 신고·납부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연결법인의 경우,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지방세법 제103조의37](#)

신고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0.9%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만원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4,200만원
3천억원 초과	2.4%	9억 4,200만원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흐름도

-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
※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하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지방세법 제103조의19](#)
- 세율**
- 표준세율(0.9%, 1.9%, 2.1%, 2.4%)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조합법인 등은 표준세율 대신 0.9%, 1.2%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
 -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1%, 2%, 4%) [지방세법 제103조의31](#)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등 미환류소득 추가과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x 10%) [지방세법 제103조의31](#)
- 산출세액**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규정 없음
 -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
 -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30](#)
 -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 (이자상당가산액, 업무무관자산 비용 및 지급이자, 이월과세 등 추가납부) [지방세법 제103조의63](#)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예정신고납부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해운기업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은 제외 (2018.1.1. 이후 성립분)
- 차감납부할세액**
- 확정신고와 납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수정신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세요!"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0

적용대상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법인세에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수정신고 제외)

차감액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법인세액

법인세 과세표준 - 외국법인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방법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
※ 당해연도 모두 차감하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향후 15년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제출서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103조의23④, 제103조의37⑤(24년 신설조항)

적용대상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내국법인
단,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분납금액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문의처 : 북구청 세무과 ☎ 053-665-2431

특별징수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은 이렇게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

사례 총부담세액 10,000원, 특별징수세액 4,000원, 본점 A시(70%), 지점 B시(30%), 특별징수시 C시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각 사업장에 안분신고	특별징수 세액은 납세자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
4,000원	A(본점) (70%)	→ 각 사업장에 안분신고	
6,000원	B(지점) (30%)	→ 차감납부세액 (안분신고납부)	

구분	사업장		특별징수지
	A(70%)	B(30%)	C
총 부담세액	10,000원		징수세액
안분세액	7,000원	3,000원	4,000원
기납부 세액		4,000원	
안분	2,800원	1,200원	
차감납부할세액	4,200원	1,800원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 초과환급금은 본점 가산

사례 총부담세액 10,000원, 특별징수세액 31,000원, 본점 A시(70%), 지점 B시(30%), 특별징수시 C시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납세자의 총부담세액 만큼만 특별징수세액을 안분하여 각 사업장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10,000원	A(본점) (70%)	총부담세액 안분
21,000원	B(지점) (30%)	환급대상액 (본점 일괄 환급)

구분	사업장		특별징수지
	A(70%)	B(30%)	C
총 부담세액	10,000원		징수세액
안분세액	7,000원	3,000원	31,000원
총액		31,000원	
안분대상액	10,000원(총부담세액)		
안분	7,000원	3,000원	
기납부 세액			
본점가산 (=환급)	21,000원 (31,000원-10,000원)		
소계	28,000원	3,000원	
차감납부할세액	-21,000원	0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꼭! 챙겨야 할 사항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신고서·기타서류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분류	종류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43호의2
	안분명세서	별지 제44호의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제43호의3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제43호의4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첨부 서류	소급공제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9,1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2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4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3

를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식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자체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또는
시·군·구청 세정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 전자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

우리 시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자동 연장

- ① 대상: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건설·제조 중소기업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 '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 '23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
수출 중소기업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위기 지역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으로,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② 연장기한: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연장

- 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실시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 ② 신청방법: 북구청 세무과에 신청서*제출
* 신청서: 법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사유 및 그 밖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북구청 세무과 ☎ 053-665-2431



2024년 4월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국세청 홍보대사 김수현·송지효

신고대상

12월 말 결산법인의 '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 4. 30.(화)까지

